

OAK(Open Access Korea) 리포지터리 보급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보급기관”)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지식콘텐츠의 오픈엑세스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협약의 목적)

본 OAK 리포지터리 제공 업무협약서(이하 협약서)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‘OAK(Open Access Korea)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’(이하 OAK 사업)에서 보급 기관이 보유한 기관의 지적성과물을 보존,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 보급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자 함에 있다.

제 2 조 (OAK 리포지터리 보급에 따른 용어 정리)

- (1) 본 협약서 상의 ‘OAK 리포지터리’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한국형 기관 리포지터리 솔루션으로써 데이터 보존 및 서비스를 위한 표준방식을 지원하는 메타 데이터 및 원문 저장소를 말한다.
- (2) 본 협약서 상의 ‘기관 리포지터리’라 함은 보급기관이 생산한 학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오픈엑세스 기반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상호공유하기 위한 솔루션을 의미한다.

제 3 조 (협약 내용)

- (1) 보급기관은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의 지적성과물을 보존 관리하여 국내외 연구자가 지적성과물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 공개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(2) OAK 사업이 시작되면, 보급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OAK 리포지터리의 보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, 지정된 사업 기간 동안 보급기관이 지정한 시스템(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)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게 제공한다. 국립중앙도서관은 보급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OAK 리포지터리에 대한 보급을 지정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.
- (3) 보급기관은 OAK 리포지터리에 탑재되는 지적성과물의 품질관리(원문 및 메타데이터)에 적극 협조한다.
- (4) 보급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요청 시 OAK 리포지터리를 통한 정보이용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.
- (5) 국립중앙도서관은 보급기관에게 OAK 리포지터리 보급 시 기관 특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과 관련기술을 제공하며 사업 기간 이후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고, 보급기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운영자 교육 및 홍보확산을 지원한다.

- (6) OAK 리포지터리 보급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송권은 보급기관이 소유하며, 불가피하게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며, 국립중앙도서관의 요청이 있을 시 보급기관은 OAK 리포지터리에 탑재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와 원문파일을 저작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소유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(7) 제 5 조의 본 협약 유효기간 이후에도, 국립중앙도서관과 보급기관은 기 구축한 OAK 리포지터리에 탑재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및 원문파일에 대한 제 3 조 (6)항의 권한은 지속되며, 계속적으로 정보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- (8) 보급기관은 OAK 리포지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(9) 보급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하는 'OAK 메타데이터 표준'을 준수한다.
- (10) 보급기관은 구축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리포지터리 운영을 개시한다.

제 4 조 (협약의 유효기간)

본 협약은 'OAK(Open Access Korea)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' 사업이 지속되고 제3조의 협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게 지속된다.

제 5 조 (협약의 해지)

국립중앙도서관과 보급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상대방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3개월 전에 해야 한다.

- (1) 국립중앙도서관이 제 3 조 (2)항의 지정된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은 경우
- (2) 보급기관이 제 3 조 (8)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
- (3) 협약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OAK 리포지터리를 국립중앙도서관과 보급기관의 상호 합의 없이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보급기관이 각각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
- (4) 기타, 제 3 조의 협약 내용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 6 조 (협조의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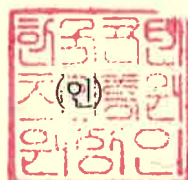
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보급기관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, 국립중앙도서관과 보급기관은 본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위와 같이 업무상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업무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7월 18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직무대행 강만석



국립중앙도서관

관장 박주환

